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특허(등록)료 감면 비율 및 감면 구간 확대 (안 제7조 제2항)

□ 개정 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경제의 핵심동력인 중소·벤처기업 등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특허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 중소·벤처기업이 핵심적으로 보유해야 할 특허의 장기간 보유에 따른 특허 유지비용 부담을 줄여 주는 방안을 마련
- * 일본은 '14년 중 개인·중소기업 감면기간을 등록 후 10년차까지로 확대하였으며, 미국은 소형단체(small entity)에 대해서는 특허권 존속기간 동안 50%감면을 시행 중

□ 개정 내용

- 중소기업 등에게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의 설정등록료 및 등록 후 4년~9년차까지의 연차등록료 감면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나,
 - * 설정등록료(1년~3년차) 70%감면, 등록 후 4년~9년차 연차등록료 30%감면
- 중소·벤처기업 등이 보유해야 할 특허권 등의 유지비용 경감을 위해 연차등록료 감면 구간과 감면 비율을 확대

* (현행) 등록 후 4년분부터 9년분까지의 연차등록료 30% 감면
→ (개정안) 등록 후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 연차등록료 50% 감면

- 중소·벤처기업 등의 경제적 약자와 공공연구기관 등의 특허 유지비용 경감을 위해 연차등록료 감면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 (현행)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중견기업
→ (개정안)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 * 중견기업은 현행 제도와 같이 설정등록료(1~3년차) 30%, 4~9년차 연차등록료 30% 감면 제도를 유지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안) 일부 >

현행	개정안
제7조(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② (생략) 1.~8. (생략) <u><신설></u>	제7조(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② (생략) 1.~8. (생략)
9.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년분부터 9년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30	9.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u>지방자치단체</u> 의 경우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
10. (생략)	10. <u>중견기업</u> 의 경우에는 4년분부터 9년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30
	11. (생략) (현행 제10호와 같음)

□ 개정 효과

- 중소·벤처기업 등 경제적 약자가 장기간 유지해야 할 핵심(원천) 특허의 유지비용 감소로 특허 기술의 활용 및 사업화를 촉진
 - *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1건당 20년간의 권리 유지비용 총 391만원(836만원 →445만원, △47%)이 경감되는 효과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부문에 대한 특허 유지비용 경감으로 특허 기술의 활용 및 사업화를 촉진

□ 참고사항

< 중소기업의 4년차 이후 연차등록료 50% 감면 도입시 등록료 납부금액 >
(단위 : 만원)

구분	설정등록 후 연차 (매년)					합계	
	1~3년차	4~6년차	7~9년차	10~12년차	13~20년차	12년 유지	20년 유지
정상 납부금액 (6항기준)	9	17	33	57	69	349	901
현행 감면 납부금액 (감면율)	3 (70%)	12 (30%)	23 (30%)	57 (감면 없음)	69 (감면 없음)	284	836
추가 감면	현행	30% →50%	30% →50%	50%(신설)	50%(신설)	-	-
추가 감면 후 납부금액 (감면율)	3 (70%)	9 (50%)	16 (50%)	29 (50%)	35 (50%)	169	445
추가 감면 효과	현행	3↓	7↓	28↓	34↓	115↓	391↓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 등의 특허 창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근거규정 마련 (안 제7조의2)

□ 개정 이유

- 중소기업·개인이 특허의 창출활동을 많이 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안 제7조의2①)
 -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연간 출원료(심사청구료 포함),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납부총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때 다른 수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부여
- 제공받은 지식재산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상표등록료와 상표관련 수수료를 포함하여 사용범위를 확대 (안 제7조의2③)

□ 개정 내용

- 중소기업 등에 수수료 인센티브를 부여할 근거규정 마련 및 제공받은 포인트의 사용범위를 확대
 - * 동 제도의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향후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여 유효기간 연장여부를 재검토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2(안) 일부 >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의2(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사용 및 환수) ① 특허청장은 <u>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u>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p> <p><u><신 설></u></p>	<p>제7조의2(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사용 및 환수) ① 특허청장은 <u>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u>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u>다만, 제2호의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u></p> <p><u>1.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u></p>

현행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이전한 경우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경우

<신설>

-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으려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식재산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제5조에 따른 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는 제외하며, 국제출원수수료의 경우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송달료 및 조사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식재산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 ④ 특허청장은 거짓으로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은 경우 등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지식재산포인트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안

- 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이전한 경우
-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경우

2. 개인, 소기업, 중기업이 연간 특허청에 납부하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관한 출원료,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디자인등록료의 합계액이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으려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식재산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국제출원수수료의 경우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송달료 및 조사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식재산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 ④ (현행과 같음)

□ 개정 효과

- 중소기업 등의 기술혁신을 통한 특허 창출활동을 촉진하고 인센티브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출원인의 편의 제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차등록료 20% 추가 감면 인센티브 유효기간을 연장한 제7조 제3항

□ 개정 이유

-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은 50%미만으로,
 -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확산과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이 필요
 - * 중소기업의 낮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필요(국정감사 등)
 -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연차등록료 20% 추가 감면('14.3. 도입) 혜택을 유지(2022년까지)하여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을 유도

* 2022년까지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을 75%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홍보 및 우수기업 인증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17.11.)

<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비율 >

구 분	'13	'14	'15	'16
대 기 업	74.5%	84.4%	77.7%	91.7%
중견기업	87.5%	75.0%	71.6%	86.1%
중소기업	35.0%	41.1%	46.2%	48.8%
기업평균	46.2%	51.5%	55.6%	60.2%
대학·공공연	95.1%	93.9%	94.8%	94.9%

- 중소·벤처기업이 지속적인 성장과 및 강소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특히 등 지식재산을 기업의 중요 자산으로 인식하고,
 - 이를 경영전략에 적극 반영·추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지식재산 경영이 필요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의 현행 연차등록료 20% 추가 감면('16.7. 도입) 혜택을 유지(2022년까지)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을 유도

*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의 목표(75%) 달성 기간인 2022년까지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에게 제공하는 추가 감면 혜택을 동일한 기간까지 적용

□ 개정 내용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에 대해 4~6년차 등록료 20%추가 감면 제도를 연장 (2022년까지 한시 적용)
- * 중소기업에게 4년차 이후 연차등록료 감면비율을 50%로 확대(중견기업은 현행 30% 감면제도 유지)하는 방안으로 개정 예정(안 §7②)으로 이를 감안하여 감면비율을 조정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안) 일부 >

현 행	개 정 안
제7조(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② (생 략) ③ 제2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소기업, 중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하여 2018년 2월 28일까지는 4년분부터 6년분까지</u>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를 각각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100원 미만의 금액은 감면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② (생 략) ③ <u>2022년 2월 28일까지는 다음..... 소기업, 중기업에 대하여 4년분부터 6년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를 각각 100분의 70까지 감면 할 수 있고 중견기업에 대하여 4년분부터 6년분까지의.....</u>
1.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1. (현행과 같음)
2.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	2. (현행과 같음)

□ 개정 효과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에게 연차 등록료를 추가로 감면해 줌으로써,
 - 중소기업 등에게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권장과 지식재산 경영을 확산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식재산 창출·활용 기반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산업 간의 균형 발전 및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마련

□ 참고 사항

구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및 인증 제도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
목적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운영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증
제도 도입	'14. 3.	'16. 7.
근거법령	발명진흥법 제11조의2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운영체계	관(특허청), 운영기관(한국발명진흥회), 심사위원(외부 전문가)	관(특허청), 운영기관(한국발명진흥회), 평가 전문위원(공모), 지식재산경영 자문회의
인증절차	신청접수 → 서류심사 → 인증여부 결정	자가진단 → 서류심사 → 현장점검 → 인증여부 결정
인증기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절차,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형태 및 보상액 결정기준 등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심의·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하여 이의 이행·준수 여부 등	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의 보유, 직무발명제도의 도입 및 운영, 임직원 1명당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비율,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등 10개 평가항목 결과 70점 이상 기업(100점 기준)
지원시책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연차 등록료 추가 감면 및 우선 심사, IP-R&D전략지원, 특허기술 전략적 사업화 등의 특허청·중기벤처부 등 정부 지원사업 가점 부여	우선심사 대상, 4~6년차 등록료 감면, 정부(특허청 및 중기부) 지원사업 우대, 이행보증 우대, 방송광고비 및 광고제작비 할인 등
유효기간	2년(유효기간 경과시 인증을 재신청하여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	3년(유효기간 경과시 지식재산경영 교육 이수 여부와 현장 재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갱신 가능)
유효기업 ('17.10.)	중소기업 : 265개 중견기업 : 31개	중소기업 : 139개

□ 개정 이유

- 특허법 제199조(실용신안법 제34조)에 따라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특허법 시행규칙 §106의11, §106의41,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17②)를 첨부한 경우 심사청구료를 감면* 중이나,
 - *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중 하나를 첨부하면 30%, 모두 첨부하면 70%의 심사청구료를 감면(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 ‘특허청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사본’을 이용하는 취지만 기재하여 심사청구하는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료 감면 신청시 출원인 등의 서류 제출 부담을 경감
 - * 심사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감면(면제)사유】란을 기재하고 국제조사보고서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해 특허청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사본 중 하나를 이용하거나 모두 이용하는 취지를 기재

□ 개정 내용

- 특허청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사본의 이용 취지를 기재하여 심사청구하는 경우에도 심사청구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안) 일부 〉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③ (생략) ④ 「특허법」 제199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개정 이유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의 설정등록료 납부시 선택에 의해 전자파일 특허(등록)증을 수령하도록 등록증 발급체계 개선
 - * 설정등록을 한때에 특허청장은 특허(등록)증을 발급해야 함(특허법 제86조 등)
- 전자파일 특허(등록)증 발급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서면 특허(등록)증 발급 대신 전자파일 특허(등록)증 발급 활성화를 촉진

□ 개정 내용

-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료 납부시 특허(등록)증 수령방법을 전자파일로 선택하면 납부해야 할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료에서 1만원* 감면
 - * 온라인·서면 신청방법에 따라 특허증 등의 재발급수수료가 5천원~9천원임을 감안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안) 일부 >

현 행	개 정 안
제7조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생 략) ② (생 략) 1.~10. (생략) <u><신 설></u>	제7조(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생 략) ② (생 략) 1.~11. (생 략) <u>12.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와 상표권의 설정등록료를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납부서로 납부하면서 특허(등록)증 수령방법을 전자파일 수령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와 상표권의 설정등록료(「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설정등록료만 해당한다)에서 1만원을 감면한다. 다만, 그 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해당 금액을 감면한다.</u>
③~⑧ (생 략)	③~⑧ (생 략)

□ 개정 효과

- 전자파일 형태의 특허(등록)증 도입 활성화로 서면 특허(등록)증 발급에 따른 예산 절감 (연간 약 8억원, '16년 특허증 등 발급기준)

**수수료 등의 납부일이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일 연장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안 제8조 제2항)**

□ 개정 이유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근로 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금융기관은 휴무일에 해당하여,
 -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출원인 등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특허료 등을 납부하기는 불가능
 - * 전자적 수단(지로, 신용카드, 특허청 홈페이지 이용 등)으로 납부할 수 없는 출원인 등은 특허료 등의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되는 등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
- 따라서, 수수료 등의 납부일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일 연장 필요

□ 개정 내용

- 수수료 등의 납부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날 이후 첫 번째 근무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 *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함(특허법§14 등)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안) 일부 >

현 행	개 정 안
제8조(납부방법 등)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일이 공휴일(토요일·휴무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 이후의 첫번째 근무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납부방법 등) ① (생략) ②.....(「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 개정 효과

- 출원인 등에게 수수료 등의 납부 편의 제공과 납부일 경과로 인한 불측의 손해 발생을 방지

□ 개정 이유

- 현 실무상 특허권자 등이 '개인'으로서 발명자 등과 같은 경우에 연차등록료 감면 대상으로 적용 중*이나,
 - *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가 개인으로서 발명자, 고안자, 창작자와 같은 경우 4년차~9년차 연차등록료를 30% 감면 중(징수규칙 제7조 제2항 제9호 및 제2호)
- 현재 규정*은 '개인'인 출원인이 '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같은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 되어 혼란이 발생
 - * (§7②2) 개인(출원인이 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같은 경우만 해당, 이하 같음), 소기업 등의 경우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를 70%감면
 - * (§7②9) 개인, 소기업 등의 경우 4년분부터 9년분까지의 특허(등록)료 30%감면
- 특허권자 등이 '개인'인 경우 연차등록료의 감면 근거와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

□ 개정 내용

- 특허권자 등이 '개인'으로서 '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같은 경우'에도 연차등록료 감면 대상이 되는 근거를 명확화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안) 일부 >

현 행	개 정 안
제7조(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생략) ②(생략) 1. (생략) 2. 개인(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u>출원인</u> 이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소기업 또는 중기업의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 등록료의 100분의 70. (이하 생략)	제7조(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생략) ②(생략) 1. (현행과 같음) 2. 개인(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u>출원인,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u> 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이하 생략)

□ 개정 효과

- 개인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근거 및 요건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

□ 개정 이유

- 상표등록료는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 지정상품추가등록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 * 상표법 제72조제1항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 현행 조문의 표현에서 상표권의 설정등록료에 관한 규정임에도 상표등록료로 표현되어 혼란을 야기하는 조문을 명확히 할 필요
-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분할납부한 경우 2회차 등록료 납부 전에 상표권이 분할(또는 분할이전)되었을 때,
 - * '12년 상표법 개정으로 10년분의 상표등록료(설정등록료 및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한 경우 2회차 등록료는 5년 이내에 납부(상표법 §72)
 - 분할(분할이전)된 후 각각의 상표권에 대한 2회차 등록료의 납부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

□ 개정 내용

- 상표권의 설정등록료에 관한 규정에 맞는 용어로서 명확히 규정
-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분할납부 후 2회차 등록료 납부 전에 상표권이 분할(분할이전)된 경우,
 - 각각의 상표권에 대한 2회차 등록료를 상표권의 설정등록일(존속기간갱신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납부방법을 명확히 규정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안) 일부 >

현 행	개 정 안
제8조(납부방법 등) ① ~ ⑥ (생략)	제8조(납부방법 등) ① ~ ⑥ (생략)
⑦ <u>상표등록료</u> , 지정상품추가등록료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법」 제74조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에는 그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납부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u>상표권의 설정등록료</u>

□ 개정 이유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 시행일, 경과 조치 사항 등 반영
 - i) 2018.4.1.시행 (전자파일 형태의 등록증 발급시 설정등록료 감면은 2018.7.1.시행)
 - ii)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과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의 연차등록료 20%추가 감면 혜택이 중단없이 이루어지도록 경과규정 마련(부칙 제2조)
 - iii) 연차등록료 감면확대(30%→50%)전 특허료 등의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허료를 납부하도록 경과규정 마련(부칙 제3조)
 - iv)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안 제7조의2) 운영의 유효기간 설정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의 지식재산포인트 사용에 관한 경과규정 마련(부칙 제4조)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부칙 개정(안) 일부 〉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2호의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u>
<u><신 설></u>	<u>제2조(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 경영 인증기업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7조 제3항에 따라 납부한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본다.</u>
<u><신 설></u>	<u>제3조(특허료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특허료 등의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의 특허료 등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u>
<u><신 설></u>	<u>제4조(유효기간 이후 지식재산포인트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제1항 후단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 경우 지식재산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제7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u>